

2023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안)

2023. 9. 22.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

2023년도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안)

1. 예산총칙

2023년도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의 세입·세출 1차 추경예산 총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2023년도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89,496,000원으로 한다.

제2조. 수입·지출 예산명세서는 붙임(수입·지출 예산서)과 같다.

제3조. 예산의 항간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며, 목간 전용은 시설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 추가경정예산은 사업계획서 내에서 법인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8. 1. 7., 2012. 8. 7.>

2023년 9월 22일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2호